

#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마케팅규정

2012. 11. 30. 제정

2014. 12. 16.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관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마케팅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케팅(Marketing)’이란 위원회와 위원회의 마케팅 대상(국민, 상업권자, 잠재 상업권자 등) 사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가치의 교환을 위하여 상품(Product), 가격(Price), 촉진(Promotion), 유통(Place)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마케팅자산(Marketing Asset)’이란 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선정, 개최, 주최, 주관, 파견, 관리, 소속, 또는 운영하는 주최대회, 경기, 행사, 체육시설, 육성선수, 선수단, 참가자 및 각각, 그들로부터 파생되는 일체의 자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마케팅자산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마케팅자산과 관련한 명칭,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저작물, 디자인, 이미지, 엠블럼, 로고, 기타 상징, 표어(슬로건 또는 모토 등), 마스코트, 행사 참가자, 대회참가자, 선수단, 육성선수 등의 초상권과 대표 이미지, 영업권(Goodwill),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지식재산을 독점 또는 배타적으로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디자인권, 명칭 사용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상품출처표지 또는 영업주체출처표지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를 요구할 권리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를 말한다.
5. ‘상업적 권리(Commercial Right)’란 마케팅자산 및 지식재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마케팅자산과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 광고권, 엠블럼 및 브랜드 사용권, 촉진권(Promotion Rights), 경기장

보드 광고권, 환대권(Hospitality Rights), 초상 활용권, 이미지 사용권(Image Rights), 보도자료 배포권, 공식행사 참여권, 홈페이지 배너 광고권, 조인식 주최권, 입장권, 상품개발권(Merchandising Rights), 유통권, 매점운영권(Concession Rights), 여행 및 관광권, 도/소매권, 자판기 설치 운영권, 도박/게임권, 방송권, 영상 및 음성 자료에 대한 사용권(Film Rights), 경기결과 활용권(Competition Data Rights), 매체권(Media Rights), 음반권 및 이와 유사한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마케팅 자산 및 지식재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면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6. ‘상업권자’란 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상업적 권리에 대한 사용권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후원사, 상품화권자, 매체권자, 경기장운영자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7. ‘후원권(Sponsorship Right)’이란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위원회에 제공하고, 권리자의 고객 또는 잠재 고객과의 의사소통이나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상업적 권리를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후원사’란 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후원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9. ‘상품화권(Licensing/Merchandising Right)’이란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위원회에 제공하고,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제작 또는 공급, 판매함에 있어 상업적 권리를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상품화권자’란 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상품화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1. ‘매체권(Media Right)’이란 마케팅자산 및 지식재산에 대한 정지 또는 동영상의 시각 자료와 청각 자료를 텔레비전, 인터넷, 모바일, 신문, DMB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방송, 보도, 전송, 출판, 배포 기타 방법으로 유통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촬영, 녹화, 인터뷰, 기록, 조사 등 마케팅자산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체권에는 기본적 시청각 제공물(또는 모든 부수 제공물)을 방송, 전송할 권리와 라디오 해설을 전송할 권리도 포함되며, 각종 대회의 공식 필름 또는 유사한 시청각 제품과 프로그램을 녹화, 생성, 이용할 권리가 포함되고, 고정 미디어 권리, 공개 전시권과 교통수단(항공기, 선박, 열차, 버스 등 포함) 내 방송 권리 등이 포함된다.

12. ‘매체권자’란 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매체권에 대한 사용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3. ‘매복마케팅(Ambush Marketing)’이란 마케팅자산 및 상업적 권리에 대한 아무런 권한 없이 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상업적 연관 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구축한 영업권(Goodwill)을 위원회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4. ‘초상권(Portrait Right)’이란 개인의 사진, 성명, 성 또는 이름, 예명, 필명, 초상, 사인, 음성, 만화, 그림, 캐릭터, 디지털 영상 또는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을 이용한 각종 이미지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말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포함한다.

15. ‘행사(SOK Event)’란 국제대회·국제회의 및 주최대회를 포함하여 위원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선수 결단 및 해단식, 각종 인터뷰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16. ‘행사 참가자’란 위원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를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 임원 개개인 또는 전체를 말한다.

17. ‘주최 대회(SOK Sport Events)’란 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하계대회, 전국동계대회, 종목별대회를 포함하여 앞으로 위원회가 신규로 창설하는 국내외 경기대회를 말한다.

18. ‘대회 참가자’란 위원회의 주최 대회에 참가하는 각 시·도 또는 각 종목의 연령(만 8세 이상), 성별, 소속을 불문한 선수, 지도자, 임원 개개인 또는 전체를 말한다.

19. ‘선수단(SOK Delegation)’이란 위원회가 구성하여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선수, 지도자, 임원 전체를 말한다.

20. ‘선수(SOK Athlete)’란 위원회가 육성 및 지원하는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 후보선수, 위원회가 개최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하는 선수를 말한다.

21. ‘대표이미지(Representative Image)’란 위원회의 행사 참가자 중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미지로, 해당 행사, 선수단, 주최 대회, 육성 선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이미지를 말한다.

22. ‘국제대회(World, Regional Games)’란 SOI, SOEA 및 국가별 위원회가 주최하고 위원회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2개 종목 이상의 모든 국제종합경기대회를 말한다.

23. ‘국제회의’란 SOI, SOEA 및 국가별 위원회가 주최하고 위원회가 대표단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모든 회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규정은 위원회의 마케팅과 관련한 모든 부문에 적용되며, 정관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 의한 상업권자의 선정에 있어서 이 규정은 계약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이 규정은 위원회, 행사 참가자, 가맹경기단체, 시도위원회, 상업권자, 마케팅자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 대회와 행사를 관람하는 자(관중 포함), 기타 위원회의 마케팅 자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마케팅 사업)** 위원회는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마케팅 사업을 직접 또는 대행사나 자회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1. 후원권에 관한 사업

- 가. 후원사의 상업적 권리의 사용권 부여 범위에 대한 결정과 조정 업무
- 나. 후원사의 유치와 계약 업무

2. 상품화권에 관한 사업

- 가. 상품화권자의 상업적 권리의 사용권 부여 범위에 대한 결정과 조정 업무
- 나. 상품화권자의 유치와 계약 업무

3. 매체권에 관한 사업

- 가. 매체권자의 상업적 권리의 사용권 부여 범위에 대한 결정과 조정 업무
- 나. 매체권자의 유치와 계약 업무
- 다. 행사 참가자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출연료 산정과 확보 등에 관한 업무
- 라. 마케팅자산의 영상, 사진 등의 제조와 판매 등에 관한 업무

4. 경기장과 스포츠시설에 관한 사업

- 가. 주최 대회의 입장권에 관한 업무
- 나. 스포츠시설을 활용한 마케팅 업무

5. 관련 단체와의 마케팅에 관한 사업

- 가. SOI, SOEA 및 국가별 위원회 등 국제스포츠기구 관련 마케팅 업무
- 나. 국제종합경기대회의 각 조직위원회와 관련한 마케팅 업무
- 다. 주최 대회의 조직위원회와 관련한 마케팅 업무

6. 마케팅자산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업

- 가. 마케팅자산의 소유권에 관한 업무
- 나. 마케팅자산의 보호에 관한 업무

- 다. 마케팅자산의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업무
- 라. 매복마케팅 근절에 관한 업무
- 7. 행사 참가자와 국내 스포츠조직 등의 마케팅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 가. 행사 참가자와 국내 스포츠조직 등과의 공동 마케팅과 관련한 업무
  - 나. 위원회의 마케팅 관련 정보, 자료의 축적과 전파에 관련한 업무
- 8. 기타 마케팅권리에 관한 사업과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 제2장 마케팅자산

**제5조(위원회의 지위)** ①위원회는 SOI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스페셜올림픽위원회(Special Olympics Korea, 약칭 SOK)로서 SOI, SOEA, 국가별 위원회 및 기타 국제스포츠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1. 국제대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의 구성, 파견과 관리
2. 국제대회의 국내 개최를 위한 후보 도시 선정과 대회 국내 개최 시 대회의 총괄, 조직과 관리
3. 국제스포츠교류, 국제스포츠기구 회의, 스페셜올림픽운동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관련된 제반 사업

③위원회는 전국하계대회, 전국동계대회, 종목별대회를 포함한 주최 대회를 개최할 권한을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④위원회는 위 각 항과 관련하여 행사(SOK Event)를 개최할 독점적 권한을 행사한다.

**제6조(올림픽 등)** ①위원회는 스페셜올림픽헌장을 준수하며, 스페셜올림픽헌장과 SOI의 제반 규정,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스페셜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②스페셜올림픽헌장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페셜올림픽(Special Olympics), 스페셜올림픽 상징(symbol), 스페셜올림픽 기(flag), 스페셜올림픽 표어(motto), 스페셜올림픽 엠블럼(embblems), 스페셜올림픽 경기대회(Special Olympics Games), 스페셜올림픽을 포함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 등 SOI가 소유하거나 생산 또는 파생시킨 모든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③스페셜올림픽의 국제대회, 국내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또는 임원은 스페셜올림픽 헌장 등 관계규정과 위원회가 정한 선수단 규정·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스페셜올림픽참가자 자신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스페셜올림픽 참가자에 대한 초상권, 사진, 이름, 스포츠 행위,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마케팅자산 및 지식재산에 관한 상업적 권리)** ①위원회는 마케팅자산 및 지식재산에 관한 일체의 상업적 권리를 독점 보유한다.

②위원회는 국제스포츠기구가 주최하는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에 파견할 선수단에 관한 모든 상업적 권리 및 관련 지식재산권을 독점 보유하며 이 권리에는 상업권자를 지정하는 권리와 이들 선수단의 명칭과 그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포함하여 선수단(개개인 포함)의 경기, 초상, 이미지, 마스코트, 캐릭터 등 일체의 유형, 무형의 것을 활용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③위원회는 전국하계대회, 전국동계대회, 종목별대회를 포함한 주최 대회에 관한 모든 상업적 권리 및 관련 지식재산권을 독점 보유하며 이 권리에는 상업권자를 지정하는 권리와 각 주최 대회와 모든 대회참가자의 명칭과 그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포함하여 대회참가자의 경기, 초상, 이미지, 마스코트, 캐릭터 등 일체의 유형, 무형의 것을 활용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④ 위원회는 행사에 대한 일체의 상업적 권리 및 관련 지식재산권을 독점 보유한다.

### 제3장 상업적 권리의 허락과 수익

**제8조(상업적 권리의 허락)** ①위원회는 상업권자를 지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유하는 마케팅자산에 관한 상업적 권리의 사용을 제3자에게 허락할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다.

②위원회는 제4조의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마케팅전문회사를 대행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케팅 수익의 사용)** ①위원회는 상업권자의 후원금이나 로열티, 매체 권료 등을 포함한 마케팅으로 얻은 수익을 위원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과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②위원회는 마케팅 사업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수익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상업권자의 권리침해 금지)** ① 선수나 개인, 기업, 단체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제3자도 마케팅자산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위원회와 관련된 영업권(Goodwill)을 이용할 수 없다.

③ 행사 참가자나 시도위원회, 상업권자(방송사, 경기장 운영자 포함)는 국내 법규에 따라 위원회 행사와 관련하여 보유하게 되는 일체의 권리를 위원회가 그러한 권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무상으로 양도 또는 이전하며, 스스로의 권리 행사와 제3자에 대한 권리부여 권한을 포기하기로 한다.

④ 행사 참가자나 시도위원회는 행사의 참가와 관련하여 각 행사 참가자나 선수단의 회장 등 모든 지식자산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위원회에 양도한다.

⑤ 위원회는 행사 참가자의 행사 참가와 관련한 녹화물, 명칭과 영상물(정지영상과 동영상 포함)에 관한 영구적인 사용 권리를 소유한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용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행사 참가자에게 서면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⑥ 위원회 행사의 촬영, 녹화와 방송, 그리고 모든 매체의 촬영, 녹화와 방송에 대한 홍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녹화물, 명칭과 영상물에 대해 위원회가 사용하고 마케팅할 권리는 독점적이다.

⑦ 위원회 행사의 홍보, 전자적 출판, 인쇄물 출판, 전자적 소프트웨어, 게임, 우표, 기념주화, 기념메달, 선수단복을 포함한 의류 및 용품, 매체용 제품 또는 동 제품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포함한 모든 용도와 관련하여, 그러한 녹화물, 명칭과 영상물에 대한 위원회의 사용 또는 임대할 권리는 독점적이다.

**제11조(매체권의 귀속)** ① 위원회는 마케팅 자산 및 지식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매체권을 보유한다.

② 위원회가 보유하는 매체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12조(매체권의 대상)** 위원회가 보유하는 매체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마케팅 자산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1. 전국하계대회, 전국동계대회, 종목별대회를 포함한 위원회의 모든 주최

대회

2. 국내외에서 열리는 선수단 결단식, 해단식, 각종 인터뷰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 행사
3. 국제대회 중 SOI 등 국제체육기구로부터 중계권을 양도받은 경기 또는 행사

**제13조(매체권의 사용허락)** 위원회는 매체권자 등에게 매체권의 이용을 허락하여 마케팅 자산 및 지식재산에 대한 촬영자료, 녹음자료, 기록자료 등을 방송, 보도, 전송, 출판, 배포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매복마케팅의 금지)** ①행사 참가자, 가맹경기단체, 시도위원회, 상업권자(마케팅규정상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기타 제3자는 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직·간접적으로 마케팅자산 또는 위원회가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어떠한 경기나 행사와 관련하여 연관성을 내포하는 일체의 행위와 올림픽, 위원회 또는 행사의 상업적 가치 또는 영업권(Goodwill)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상업권자가 아닌 자가 선수단, 주최 대회를 포함한 위원회 행사에 대하여 응원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문구나 용어 또는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와 상업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매복마케팅으로 간주되며 위원회는 손해배상, 부당이득의 반환, 금지청구를 포함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스페셜올림픽을 포함한 행사(SOK Event)의 모든 휘장과 마크 등의 사용은 이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에 정한 조치와 별도로 위원회는 매복마케팅 행위를 하였거나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매복마케팅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4장 상업권자

**제15조(상업권자의 자격)** 상업권자의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신의 참여 목적이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것
2. 대한민국 지적·자폐성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대한 공헌 의지가 있을 것
3.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었을 것
4. 위원회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계 유지의 의지가 있을 것

- 제16조(상업권자의 권리)** ①상업권자는 마케팅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권리(제2조 5호에 열거한 상업적 권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위원회가 상업권자와 협의한 바에 따른다.)를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부여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업권자를 선정할 때 업종별 기타 구분 항목에 따라 독점 또는 비독점, 또는 복수의 상업권자를 선정할 수 있고 상업권자는 그에 따라 독점 또는 비독점 지위에서 위원회와 협의한 바에 따라 상업적 권리 또는 마케팅자산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 ②후원사, 상품화권자, 매체권자 등 상업권자는 그 지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후원금, 로열티, 매체권료 등 정당한 대가를 내고 위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 ③상업권자 이외에는 어떠한 제3자도 마케팅자산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 ④상업권자 이외의 자가 어떠한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의 상업권자를 가장하는 일체의 광고나 판촉행위는 위원회 및 상업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행위로 간주한다.
- ⑤제4항의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행사기간이나 전후를 불문하고 위원회 선수단이나 행사 참가자를 응원 또는 후원한다거나 선전을 기원한다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용어 사용 기타 방법으로 주최 대회와 위원회 행사와 관련이 있음을 유발, 암시하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은 연상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 등이 포함되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⑥국내 또는 국외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 국제대회와 관련하여 SOI 등 국제스포츠기구가 그 권리자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단체에 즉각 통보하여 그 요청에 따른 조치를 즉각 취하고, 위원회가 권리를 가지는 국제대회나 관련 사항(예: 위원회 선수단의 명칭이나 경기 성적, 기타 주최 대회와 위원회 행사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즉각 법적 조치를 한다.

- 제17조(상업권자의 의무)** ①상업권자는 마케팅자산을 적극적으로 홍보, 촉진하여야 한다.
- ②상업권자는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매복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 ③상업권자는 위원회나 마케팅자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매복마케팅을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이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8조(후원사)** ①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후원사는 공식파트너(Premier, Partner)와 공식후원사(Supplier, Supporter), 협찬사(Donor) 등으로 구분한다. 후원사 선정기준은 그 구분 및 등급에 따라 변경되거나 다른 기준이 추가되는 등 수정, 가감될 수 있고 해당 후원사 별로 상이한 선정기준을 부여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스폰서십 내규에 따른다.

②각 후원사의 후원권리 또는 마케팅자산의 사용권은 위원회와 후원사와의 당사자 계약에 따라 부여되며 그 권리는 후원사의 구분 및 등급에 따라 정해진다.

③후원사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위원회에 제공하고, 자신의 고객이나 잠재 고객과의 의사소통이나 광고에 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마케팅 자산을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후원금의 금액과 기타 위원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후원사의 등급과 상업적 권리의 사용 범위를 결정한다.

⑤후원사는 스포셜올림픽을 포함하여 위원회 선수단의 경기 장면을 포함한 마케팅자산을 위원회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광고 등 마케팅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1. 위원회 선수단을 포함한 위원회 행사 참가자의 스포셜올림픽 등의 행사에 대해 선전을 기원하거나 성과에 대해 칭찬하는 방식

2. 후원사 또는 그의 상품 등의 성능과 위원회 선수단 또는 위원회 육성 선수들의 경기력이 연관되지 않는 방식

⑥스포츠올림픽 등의 행사 참가자는 각 해당 행사 기간에 후원사의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이 아닌 한 어떠한 제3자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에 참여할 수 없으며, 행사 기간은 위원회가 정한다(단, 특별히 정한 기간이 없으면, 그 대회 개막 9일 전부터 폐막 3일 후까지의 기간).

⑦후원사는 행사(SOK Event)와 관련한 대표 이미지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상품화권자)** ①상품화권자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위원회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게 되는 마케팅자산에 관한 상업적 권리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 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기념주화, 기념메달, 기념우표, 선수단 용품(의류와 신발 포함) 등을 포함한 상품과 여행 운영 계획, 체험 운영 계획, 교육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서비스를 제작,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상품화권을 통해 제작된 상품과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제작,

판매 또는 제공과 관련한 광고 행위 등은 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르되, 상품화권자 자신 또는 유통 과정 등에 관련되는 제3자에 의해 후원사 또는 매체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품의 품질, 상품의 광고, 상품 유통 과정 등에서 위원회와 마케팅자산의 품위나 명성, 이미지에 해를 입히거나 손상을 주는 경우 상품화권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매체권자)** 매체권자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위원회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원회가 허락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마케팅자산 및 지식재산의 모든 정지 또는 동영상의 시각 자료와 청각 자료를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 DMB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위원회와 합의된 방식으로 방송, 보도, 전송, 출판, 배포 기타의 방법으로 유통할 수 있다.

**제21조(매체 관련 저작권)** 위원회가 별도로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허락받은 매체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체권자의 모든 저작권은 그 이용허락 과정에서 제공되는 대가에 의하여 위원회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22조(방송 중 광고)** ①매체권자는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매체권 이용 시, 후원사와 상품화권자의 재정적 지원이 대한민국 지적·자폐성장애인 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인지하여, 경기장, 인터뷰 공간 등을 포함한 위원회 행사 공간 또는 장소에 있는 위원회 후원사, 상품화권자의 광고물과 상품 등이 노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②가상광고와 간접광고는 「방송법」에 따르며, 그 광고에 대한 권리는 위원회가 보유하고 그 허용여부도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3조(후원사 협약방법 및 시기)** ①위원회는 상시로 후원협약 MOU 및 일시후원에 의하여 후원자와 협약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후원사 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은 SOI헌장 및 SOI, SOEA, SOK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상업권자 계약체결)** 상업권자 선정 계약체결은 위원회와 해당 상업권자 당사자 간의 직접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가 지정한 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상업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상업권자 선정대가 지급방법)** ① 상업권자가 그 선정대가로 위원회에 지급하는 금원(현금, 현물 등)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직접 지급한다.

② 위원회가 마케팅대행사를 통하여 상업권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상업권자 선정대가는 상업권자가 직접 위원회에 지급하고 마케팅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위원회에서 마케팅대행사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방법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 상업권자 및 마케팅대행사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장 행사 참가자

**제26조(초상 및 경기 장면에 대한 권리의 귀속)** 행사 참가자 각자의 초상이나 경기 장면에 대한 활용권리는 위원회에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되거나 위원회가 모두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위원회가 지급한 공식 복장을 착용한 초상
2. 위원회 행사 등에서 얻어진 위원회 행사 참가자의 초상, 경기 장면, 연습 장면, 인터뷰 장면 등(사진, 동영상 및 영상, 기타 매체 형태를 불문)
3. 기타 초상 및 경기장면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대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참가자 초상의 사용)** ①위원회(및 위원회가 허락한 범위에 한하여 상업권자)는 행사 참가자의 초상이나 경기 장면, 훈련 장면, 기타 공식·비공식 행사와 관련된 장면에 대하여 각종 사업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행사 참가자는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위원회에 초상 등에 대한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거나(인격권 등 권리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초상권(초상사용권을 포함한 재산적 권리)을 비롯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행사 참가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후원계약이나 기타 일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계약 상대방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원회 정관, 가맹경기단체 규정, 시도지부 규정, 법제상별위원회 규정, 선수단 규정,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대표 이미지의 사용)** 위원회는 대표 이미지나 경기 장면 기타 제27

조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업권자에게 이에 대한 사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선수를 포함한 행사 참가자는 대표 이미지 등에 대한 초상권 사용료 청구와 기타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9조(행사 참가자의 초상권 사용)** 행사 참가자가 행사와 관련된 자신의 초상을 포함한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대회 기간 중 광고 등 상업적 활동 금지)** 행사 참가자는 위원회 선수단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와 주최대회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단, 특별히 정한 기간이 없으면, 그 대회 개시 9일 전부터 대회 폐막 3일 후까지의 기간)에 자신의 초상을 사용한 광고 등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다. 단, 후원사의 광고 등의 활동은 제한되지 아니하며, 세부 사항은 제 18조에 따른다.

**제31조(기타 초상이나 장면의 사용)** 위원회 행사나 주최 대회에서 입장권이나 출입증(AD 카드 등)으로 경기장 또는 행사장 안에 들어온 관중과 기타 관계자는 그 음성, 영상 및 초상 등에 관하여 기존 매체나 장차 개발될 매체에 의한 경우를 불문하고 사용권을 포함하여 그에 관한 권리를 위원회가 보유하거나 행사한다는 데 동의한다.

**제32조(상업권자의 초상 사용)** 상업권자가 행사 참가자의 초상 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3조(동의)** ① 행사 참가자는 위원회의 권리 활용이 위원회와 해당 종목의 스포츠 발전에 기초가 됨을 승인한다.

② 행사 참가자는 자신의 초상과 경기 장면 등에 대한 초상권·저작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가 위원회에 귀속되거나 별도의 대가 없이 양도 혹은 자신의 권리행사가 제한됨을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행사 참가자는 대회 또는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이를 승인하고 SOI나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동의서 또는 참가자 준수사항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동의서는 행사 참가자가 그 초상의 동영상 또는 카메라에 의한 촬영, 방송, 기록, 식별 등의 권한을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른다.

⑤제5장의 ‘행사 참가자’에는 대회나 행사의 관중이나 입장객도 포함되며 입장권이나 위원회가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4조(불이익 조치)** 행사 참가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사 참가자가 부담하며, 행사 참가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위원회 정관, 가맹경기단체규정, 시도지부 규정, 선수등록 규정, 법제상별위원회 규정, 선수단 규정, 기타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5조(용품의 사용)** ①선수단의 지도자를 포함한 임원과 모든 선수, 대회 참가자와 행사 참가자는 대회 또는 경기의 공식 훈련과 경기 중 그리고 국제대회의 시상식을 포함한 공식 행사에 참가할 때는 위원회가 지급하는 용품(복장, 기구, 신발, 가방, 핀, 기타용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용품과 다른 것을 착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선수는 사전에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위원회가 정하는 지시와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6장 시도위원회

**제36조(시도위원회의 권리)** ①시도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상업권자를 모집하고 권리를 행사한다.

②시도위원회는 자체 상업권자와의 계약체결 시에 위원회의 마케팅자산 및 상업적 권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위원회는 위원회 선수단과 위원회 주최 대회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업적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제37조(시도위원회의 의무)** ①시도위원회는 위원회가 파견하는 선수단의 경기복에 스페셜올림픽 휘장이나 마크를 위원회와 합의된 방식으로 노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위원회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위원회 정관, 가맹경기단체 규정, 시도지부 규정, 법제상별위원회 규정, 선수단 규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가 제한되거나



징계,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부 칙 <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